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손실보상금의 환수 주체와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·환수 주체에 해경을 추가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받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74호, 2024. 3. 19. 공포, 9. 2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잘못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양경찰청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2024. 7. 15. ~ 8. 26.)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경찰관직무집행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·흉기등”을 “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·흉기 등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교부해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조제6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·제한)”을 “(대간첩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·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 등”을 “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지역 등”으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방송·벽보·경고판·전단살포 등”을 “방송·벽보·경고판·전단살포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의한 출석요구서”를 “따른 출석요구서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

의한”을 “법 제4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단서에 따라”로 한다.

1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행요구를 한 때
3.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임시영치를 한 때
4.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

제10조제2항 중 “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(이하 “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찰청장등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찰청장등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경찰청장등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경찰청장등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찰청장등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찰청장 또는

시·도경찰청장”을 각각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3제1항 중 “위원회(경찰청 및 시·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”를 “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국가경찰위원회는”를 “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”로,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경찰청에”를 “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”로, “경찰청 소속”을 “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”으로,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”를 “시·도경찰청, 지방해양경찰청 및 경찰서와 해양경찰서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“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”은 각각 “시·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” 및 “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”로,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”은 각각 “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” 및 “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”으로 본다.

제20조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“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(이하 “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

분 전단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각각 “경찰청장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<u>경찰관직무집행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경찰관 직무집행법</u> 」----- -----.
제2조(임시영치) 경찰공무원이 <u>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·흉기등을</u>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(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<u>교부하여야</u> 한다.	제2조(임시영치) ----- 「 <u>경찰관 직무집행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에 따라 <u>무기·흉기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부해야</u> -----.
제3조(피구호자의 인계통보) <u>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</u>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·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	제3조(피구호자의 인계통보) <u>법 제4조제6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<u>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·제한</u>)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<u>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</u>	제4조(<u>대간첩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·제한</u>) ----- ----- <u>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지역 등</u> ----- -----

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
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
체없이 그 기간·장소 기타 필
요한 사항을 방송·벽보·경고
판·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
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
다.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
다.

제6조(출석요구서) 법 제8조제2항
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
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제7조(보고) 경찰공무원은 다음의
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
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
야 한다.

1.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
한 동행요구를 한 때
2.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
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
치를 한 때
3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
한 임시영치를 한 때
4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
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
5. 삭 제
6.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

----- 지
체 없이 ----- 그 밖에 -
----- 방송·벽보·경고판
·전단살포 등 -----

--. -----
--.

제6조(출석요구서) -----
----- 따른 출석요구서-----
-----.

제7조(보고) -----

----- 보고해야
-----.

1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행
요구를 한 때
2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-----

3.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임시
영치를 한 때
4.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
제지한 때
6. ----- 제3항에 따

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
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
검색을 한 때

7.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
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

제10조(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
방법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
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
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
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
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
설치된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시
·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
의 장(이하 “경찰청장등”이라
한다)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
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
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
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
액을 결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청구를 각하(却下)하는 결
정을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④ 경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

라 -----

7. ----- 단서에 따라 -

제10조(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
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또는 지방해양경찰

청의 장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경찰청장, 해양경

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

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-- 해야 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

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⑤ ~ ⑧ (생략)

제11조(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경찰청장등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

· 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통지해야 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----. ----. 해야 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----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7조의2(보상금의 환수절차) ①

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”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는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보상금의 환수절차) ①

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③ -----

-----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-----

제17조의3(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)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(경찰청 및 시·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9조(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)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

제17조의3(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) ① -----
-- 위원회-----

-----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
해야 한다.

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-- 경우-----

-----.

제19조(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) ① -----
-----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-----
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-
-----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-----.

② -----
시·도경찰청, 지방해양경찰청 및 경찰서와 해양경찰서-----

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이
경우 “경찰청“은 각각 “시·도
경찰청“ 또는 “경찰서“로, “경찰
청장“은 각각 “시·도경찰청장“
또는 “경찰서장“으로 본다.

③·④ (생략)

제20조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
금의 지급 기준) 법 제11조의3
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
은 5억원으로 하며, 구체적인
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
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
금의 지급 절차 등) ① 경찰청
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
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
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
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
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
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 보상금
을 지급한다.

-----. 이
경우 “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”
은 각각 “시·도경찰청 또는 지
방해양경찰청” 및 “경찰서 또는
해양경찰서”로, “경찰청장 또는
해양경찰청장”은 각각 “시·도
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
장” 및 “경찰서장 또는 해양경
찰서장”으로 본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
금의 지급 기준) -----

----- 경찰청장 또
는 해양경찰청장-----
-----.

제21조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
금의 지급 절차 등) ① -----
--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
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경찰서
장 또는 해양경찰서장(이하 “경
찰청장등”이라 한다)-----

-----.

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·의결한다.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③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1조의2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) ①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-----
-----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-----

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경찰청장등-----

-----.

제21조의2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) ① 경찰청장등-----

-----.

1. ~ 4. (생략)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”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<u>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</u>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. 제22조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)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경찰청장이</u> 정하여 고시한다.	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장등</u>----- ----- -----. 제22조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) - ----- ----- ----- -- <u>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</u>----- 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1192